

「학칙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2. 3. 1. 개정 판 (시행 2012. 3. 1.) → 2013. 5. 21. 개정 판 (시행 2013. 5. 21.)

바뀜 11 · 신설 1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94/compare?from=719&to=720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5:07:05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, <u>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교육</u> <u>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교육</u> <u>폭넓은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 교육</u> <u>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심오한 학문 연구</u> <u>진리와 사랑의 정신으로 온 세계에 평화를 구현하는 최선의</u> <u>봉사를 교육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 및 목표)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, <u>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</u> <u>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"미션, 비전, 열정을 지닌 창의적</u> <u>지식인"을 양성함을 교육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교육 목표를</u> <u>추진한다.</u> <u>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</u> <u>육성</u> <u>건전한성과 사회 윤리 및 폭넓은 문화적 소양 함양</u> <u>정신리에 기초한 기독교세계관에 따른 인류애와 환경</u> <u>보존의식 함양</u> <u>전통식과 실용 기술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</u> <u>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 함양</u> <u>세계화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</u> <u>수있는국제적식견과언어능력을지닌글로벌 리더 육성</u> <u>인도주의적치관과 세계 시민 정신을 지닌 지구촌 봉사자</u> <u>육성</u>
제2조(편제) ① 우리 대학교에 신학대학, 인문사회대학, 보건복지대학, 약학대학, 과학기술대학, 문화예술대학, 대학원, 신학전문대학원, 경영대학원, 보건복지대학원,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. <개정 2007-02-23> ② 대학원, 신학전문대학원, 경영대학원,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.	제2조(편제) ① 우리 대학교에 신학대학, 인문사회대학, 보건복지대학, 약학대학, 과학기술대학, 문화예술대학, 대학원,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보건복지대학원,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. <개정 2007-02-23> ② 대학원,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2-11-21>
제8조(부속기관)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. <개정 2004-02-13> ① 총장 직속기관 1. <u>인성교육원(글로벌리더십 교육센터)</u> 2. 사회봉사단 ② 부속기관 1. 대학교회 2. 중앙도서관 3. 정보전산원 4. 사회교육원 5. 국제문화교육원 6. 생활교육관 7. <u>예언의신연구원</u> 8. 박물관	제8조(부속기관)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. <개정 2004-02-13> ① 총장 직속기관 1. <u>비전드림센터</u> 2. 사회봉사단 ② 부속기관 1. 대학교회 2. 중앙도서관 3. 정보전산원 4. 사회교육원 5. 국제문화교육원 6. 생활교육관 7. <u>재림교회/E.G.화잇 연구센터</u> 8. 박물관

현 행	개 정 안
9. 출판부 10. 건강증진센터 11. <u>삭제 <개정 2008-01-28></u> 12. 유치원 <개정 2006-01-26> 13. 기록관 <신설 2008-01-28> 14. 원격평생교육원 <신설 2012-01-09> ③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	9. 출판부 10. 건강증진센터 11. <u>체육문화센터</u> 12. 유치원 <개정 2006-01-26> 13. 기록관 <신설 2008-01-28> 14. 원격평생교육원 <신설 2012-01-09> ③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제10조(입학 자격) 우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<u>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거나 동 교인이 되고자 하는</u>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 <개정 2004-02-13> 1. 고등학교 졸업자(졸업 예정자)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.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항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	제10조(입학 자격) 우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<u>본교의 교육이념에 동의하는</u>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 <개정 2004-02-13> 1. 고등학교 졸업자(졸업 예정자)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.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항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제18조(휴학 기간) 휴학은 1년(또는 학기)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,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2-02-06>	제18조(휴학 기간) 휴학은 1년(또는 학기)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,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u>단,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, 또는 임신·출산·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 <개정 2002-02-06>
제21조(퇴학 및 제적)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. 1.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.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.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. 학칙 제 3 조 제 1 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 한 자 5. 타교에 입학한 자 6. <u>성적이 부진한 자</u> 7. <삭제 2007-02-23>	제21조(퇴학 및 제적)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. 1.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.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.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. 학칙 제 3 조 제 1 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 한 자 5. 타교에 입학한 자 6. <u>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를 받은 자.</u> <개정 2012-09-27> 7. <삭제 2007-02-23>
제22조(제적자의 재입학) ① 총장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1, 2, 6호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<u>개선된 모습이 현저한 자에 한하여</u>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. 단,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	제22조(제적자의 재입학) ① 제적된 자 중 <u>재입학을 원하는 자는</u>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. 단,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. <개정 2006-01-26>

현행	개정안
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. <개정 2006-01-26>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.	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<u>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. 단, 제21조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.</u> <개정 2012-09-27> ③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<u>신청</u>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-09-27>
제24조(교과목의 분류)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,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. ②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. ③ 교양과목은 국제화교육, 보건복지교육, 인문과학, 사회과학, 자연과학, 예체능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. <개정 2004-02-13>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한다.	제24조(교과목의 분류)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,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. ②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. ③ 교양과목은 인문학 영역, 사회과학영역, 자연과학영역, 문화예술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. <개정 2004-02-13>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한다.
제46조(학생회) ①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(이하 '총학생회'라 한다)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. ② 학생회는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.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(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)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, 학생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(의장), 학생지원부장(서기), 교목실장, <u>여학생부장, 교무과장, 학생지원과장, 남.여생활관장, 학과(부)장으로 구성한다.</u>	제46조(학생회) ①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(이하 '총학생회'라 한다)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. ② 학생회는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.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(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)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, 학생생활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(의장), 학생지원팀장(서기), 교목실장, 교무과장, 남.여생활관장, <u>각 학과(부)장으로 구성한다.</u>
제59조(교직원의 직제 및 정원) 우리 대학교에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, 겸임교수, 강사, 조교 및 사무직원 등의 교직원을 두고, 그 직제 및 정원은 별도로 한다.	제59조(교직원의 직제 및 정원) 우리 대학교에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겸임교수, 강사, 조교 및 사무직원 등의 교직원을 두고, 그 직제 및 정원은 별도로 한다.
<신 설>	제59조의2(교원의 교수시간) <u>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,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</u>
제80조(학교기업) ① 교육.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, 기술개발.이전, 현장실험.실습, 사업화,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.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. ②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은 삼육대학교 교지 내에 위치한다. ③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. 1.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(동 사업을 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.) 2.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.	제80조(학교기업) ① 교육.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, 기술개발.이전, 현장실험.실습, 사업화,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.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. ②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은 삼육대학교 교지 내에 위치한다. ③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. 1.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(동 사업을 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.) 2. <u>원예산물생산 및 교내외 현장교육(동 사업을 위해</u>

현 행	개 정 안
④ 기타 학교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. [본조시설: 2005.6.10]	원예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.) <신설 2013-01-07> 3.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. ④ 기타 학교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. [본조시설: 2005.6.10]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 및 목표)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,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"미션, 비전, 열정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"을 양성함을 교육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교육 목표를 추진한다.

- ≡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 육성
- ≡ 건전한 인성과 사회 윤리 및 폭넓은 문화적 소양 함양
- ≡ 성경진리에 기초한 기독교세계관에 따른 인류애와 환경 보존의식 함양
- ≡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
- ≡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 함양
- ≡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식견과 언어능력을 지닌 글로벌 리더 육성
- ≡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세계 시민 정신을 지닌 지구촌 봉사자 육성

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"신학전문대학원"을 각각 "신학대학원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"인성교육원(글로벌리더십 교육센터)"를 "비전드림센터"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7호 중 "예언의신연구원"을 "재림교회/E.G.화잇 연구센터"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11호 중 "삭제 <개정 2008-01-28>"를 "체육문화센터"로 한다.

제10조 중 "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거나 동 교인이 되고자 하는"을 "본교의 교육이념에 동의하는"으로 한다.

제18조 중 "없다. <개정"을 "없다. 단,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, 또는 임신·출산·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"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제6호 중 "성적이 부진한 자"를 "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를 받은 자. <개정 2012-09-27>"로 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2조(제적자의 재입학)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. 단,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.
-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. 단, 제21조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.
- ③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3항 중 "국제화교육, 보건복지교육, 인문과학, 사회과학, 자연과학, 예체능 영역"을 "인문학 영역, 사회과학영역, 자연과학영역, 문화예술영역"으로 한다.

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(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)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, 학생생활지도

위원은 학생지원처장(의장), 학생지원팀장(서기), 교목실장, 교무과장, 남.여생활관장, 각 학과(부)장으로 구성한다.

제59조 중 "전임강사, 겸임교수"를 "겸임교수"로 한다.

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의2(교원의 교수시간)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,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.

1.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(동 사업을 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.)
2. 원예산물생산 및 교내외 현장교육(동 사업을 위해 원예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.)
3.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학칙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